제 2020-9호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석문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20년02월15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 소	신고사항
이**	이** 1962-03-25	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	재등록
이**	이** 1964-08-02	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	재등록
황**	황** 1972-04-05	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큰골길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(담당자 : 유미숙 문의전화 : 041-360-8221)

2020년 02월 07일

석문면장 